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0. 1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조○민 (‘00. 9. 21.)	경상남도 통영시 미나리길 60(무전동)1**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따른 초기상담을 위해 전화연락 및 출석통지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상담일(‘26.8.5., ’26.8.12.) 불출석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·취업지원 종료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26. 10. 01. ~ 2026. 10. 15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+센터 김순자(☎055-650-18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